

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(의안번호 제57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1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12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폐지이유

- 도로교통법에 정·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의 권한 위임사항으로서 고성군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91. 2. 6 조례 제124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장,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도로교통법 제정이후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내려 조례를 제정하였을 것인데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
- 답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